



서 울 행 정 법 원

제 8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53314 담배소비세 등 부과처분 취소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이○○, 김○○
피 고 별지 1 피고 목록 기재와 같다.
피고 1 내지 53, 55 내지 127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전○○
피고 54의 소송대리인 ○○○○공단
담당변호사 박○○, 김○○
변 론 종 결 2025. 4. 30.
판 결 선 고 2025. 11. 19.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별지 2 목록 '처분청' 열 기재 각 피고들이 '처분일자' 열 기재 각 처분일자에 원고에 대하여 한 각 담배소비세(가산세 포함) 및 지방교육세(가산세 포함)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1. 20.부터 2020. 6. 30.까지 ○○ 소재 B유한공사(B有限公司, 영문명 C, 이하 'B사'라 한다)가 생산한 액상 니코틴 원액(이하 '이 사건 니코틴'이라 한다)을 사용하여 D회사 등(이하 '이 사건 거래처'라 한다)이 제조한 니코틴 함유 전자담배 용액(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이 사건 니코틴이 '연초 잎'이 아닌 '연초 대줄기'에서 추출한 것이어서 담배사업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담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담배소비세 및 지방교육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나. ○○원장은 2019. 12. 4. ○○청장에게 탈세 및 국민건강 침해를 초래하는 전자담배의 '줄기 추출 니코틴' 관련 감사 결과를 통보하였고, ○○청장은 2020. 7. 6. ○○세관장에게 기획심사를 지시하였다.

다. ○○세관장은 2020. 8. 10.부터 2020. 12. 14.까지 원고에 대한 관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물품에 '연초 잎'의 일부분인 '잎맥' 등에서 추출한 니코틴이 함유되어 있어 담배사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담배'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1. 11. 29. 원고에게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가산세 등 합계 26,036,187,780원을 고지하였고 피고들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이에 피고들은 별지 2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및 가산세를 각 부과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물품에 사용된 이 사건 니코틴은 연초의 대줄기에서 추출한 것이므로, 이 사건 물품은 담배사업법 제2조 제1호의 담배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에서 담배 가공 절차는 '농가 재배 → 연초점에서 연초 잎 등 수매 → 복고장[이 사건에서는 E유한책임공사(E有限责任公司), 이하 'E공사'라 한다]에서 연초 잎 등 가공, 재건조 → 켈런장에서 등급분류(연초 잎 슬라이스, 길고 짧은 연경, 연초 잎 부스러기) → 켈런제조공장에서 담배 제조' 순으로 이루어진다. E공사는 연초점에서 공급받은 연초를 ④ 슬라이스 연초 잎, ⑤ 길고 짧은 연경, ⑥ 연초 잎 부스러기, ⑦ 폐기 연경 등 4가지 형태로 가공·분류한 뒤, 위 ④, ⑤, ⑥는 담배제조허가를 받은 연초기업에 공급하고, ⑦ 폐기연경은 생물질 생산업체 또는 폐기농산물 처리업체 등에 공급하면서, ○○의 ○○○○공화국연초전매법(이하 '연초전매법'이라 한다)의 규율을 받지 않는 연초 대줄기도 B사와 같은 생물질 생산업체 또는 폐기농산물 처리업체에 공급하였다. B사는 위와 같이 공급받은 연초 대줄기에서 니코틴을 추출하였다.

2) B사는 ○○의 연초전매법상 담배제조허가를 받지 않아 연초 잎 및 잎맥을 원료로 니코틴을 생산할 수는 없다. 다만 B사는 연초 대줄기로부터 니코틴을 추출할 수 있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E공사와 연초 재배 농민으로부터 ○○의 연초전매법 적용을 받지 않는 연초 대줄기를 별도로 공급받아 니코틴을 추출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니코틴



생산에 연초 잎 부분을 사용한 사실이 없다. E공사가 B사에게 ④ 폐기연경을 공급하는 계약과 관련하여 ○○ 당국의 승인을 받았는데, 이는 니코틴이 아닌 살충제와 유기비료 생산의 원료로만 사용하도록 승인받은 것이어서 ④ 폐기연경에서 니코틴을 추출하는 것은 엄격한 처벌을 감수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3) stem이나 연경(烟梗)은 연초 잎의 주맥 또는 지맥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연초의 대줄기를 지칭할 때도 사용되는 단어이다. HS 해설서에서 줄기를 stalks와 stems을 모두 사용하면서 주맥을 midribs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 stem은 대줄기를 지칭하는 말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B사가 E공사로부터 공급받은 폐기연경은 줄기절단법으로 수확된 연초에서 담배 가공에 사용되는 연초 잎을 분리한 뒤 남은 연초 대줄기를 의미한다. 원고가 이 사건 물품 수입신고서에 기재한 'Stem Nicotine' 역시 '연초 대줄기를 원료로 한 니코틴'을 뜻한다.

4) 과세요건의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하여야 하는데, 피고들은 이 사건 물품이 연초 잎에서 추출한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된 것이라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였다.

나. ○○○○부는 2016. 9. 29. "연초의 줄기와 뿌리에서 추출한 니코틴은 담배사업법령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민원 회신을 하였고, 위 회신은 공적 견해 표명으로서 '통상적으로 담배 제품 제조에 사용되는 잎몸 이외의 잎맥이나 대줄기에서 추출한 니코틴은 담배사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신뢰를 형성하였으며, 원고는 이를 신뢰하여 국외에서 줄기 니코틴을 수입하였다. 또한, ○○청은 2019. 11. 4.경 줄기 니코틴의 경우 거래계약서, 제조공정별 제조사실 증빙자료, 제조자 허가증 등의 자료를 모두 제출한 경우에만 수입신고를 수리하겠다는 내용의 '액상형 전자담배 니코틴용액 등 수입통관 강화 방안'을 발표하였는데, 이는 '위와 같은 자료가 구비되면 수입된 니코틴을



줄기 니코틴으로 인정하고 개별소비세 등의 과세 처분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사표시에 해당하고, 이후 상당한 기간에 걸쳐 그와 같은 행정관행이 형성되었다. 원고는 위와 같은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하고 관세청이 요구하는 자료를 모두 제출하여 이 사건 물품의 수입신고를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 내지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에 반하여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3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1) 구 지방세법(2020. 12. 29. 법률 제1776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47조 제1호는 담배소비세에서 규정하는 '담배'를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로 규정하면서, 제48조 제1항에서 담배소비세의 대상을 담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제1호 마목은 '제5종 전자담배'를 규정하고 있으며, 담배사업법 제2조 제1호에서는 "'담배'란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지방세법 제150조 제4호는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자로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를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항고소송에 있어서 당해 행정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그 행정처분의 적법을 주장하는 처분청에 있지만, 행정청이 주장하는 당해 행정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정도로 증명이 된 경우에는 그와 상반되는 예외적인 사정에 대한 주장과 증명은 상대방이 증명할 책임을 진다고 봄이 타



당하다(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0두27639, 2764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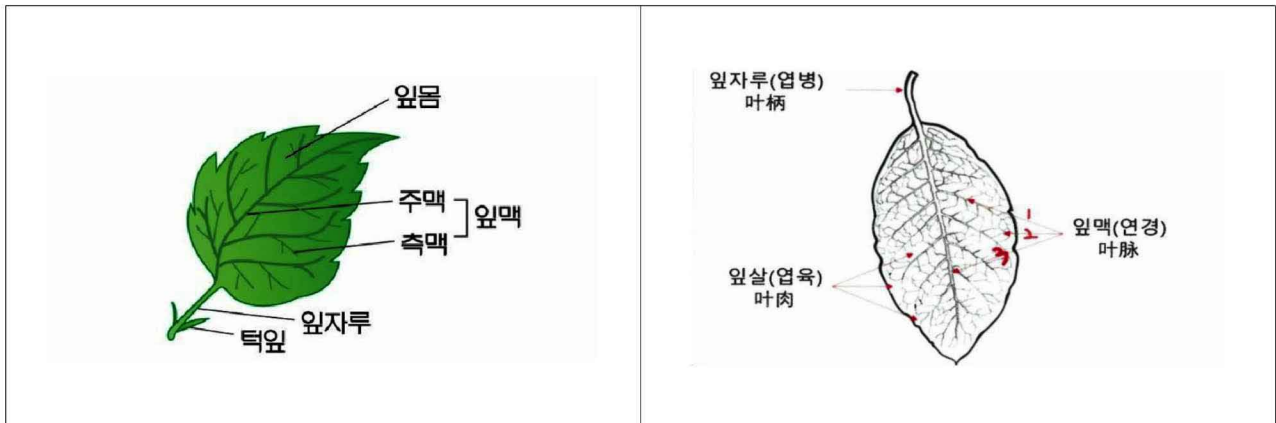
1. 10. 선고 2011두7854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앞서 채택한 각 증거, 갑 제7 내지 15, 17 내지 86호증, 을가 제1 내지 4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연경(烟梗)' 관련

가) 연초란 가지과에 속하는 다년생 초본식물로서, 식물 자체에 니코틴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주로 기호품(담배)의 원료로 재배되고 있고, 뿌리와 줄기, 잎으로 구성되는데, 그중에서도 연초, 껌련, 니코틴 원액 등 담배의 재료로 주로 사용 및 재배되는 부분은 잎 부분이다. 연초 잎의 모양 및 명칭은 아래 그림과 같다.



나) ○○의 백과사전(○○ 바이두 백과사전 및 MBA 백과사전)에는 연경(烟梗)을 "담뱃잎의 두껍고 단단한 엽맥으로 잎 무게의 약 25~30%(1/4)를 차지"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고, 위 바이두 백과사전은 연경을 영문으로 "Tobacco Stem"이라고 표기하고 있다.

다) B사의 회사 소개자료는 도표로 '연초 폐기물(Tobacco waste)은 연초 폐기물



센터(Waste disposal center)에서 재활용되어 니코틴(Nicotine), 바이오 유기 비료(Bio-organic fertilizer), 담배 추출물(Tobacco extract) 등이 만들어질 수 있다'며 연초 폐기물이 재활용되는 여러 방안을 설명한 후, '담배 주맥(stems)과 폐기물(waste materials)은 재활용될 수 있고, 광범위한 시장발전 전망이 있다'는 기재 아래, 담뱃잎의 잎몸 부분을 'mesophyll'로 표시하면서 담배를 만드는 주된 물질로, 잎맥 중 주맥 부분을 'Stem'으로 표시하면서 연초제조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로서 니코틴을 추출하는 부분으로, 담뱃잎 하단 줄기 부분을 '기타(others)'로 표시하면서 유기농 비료(organic fertilizers)의 원료로 사용되는 다른 폐기물(other waste)로 설명하고 있다.

2) ○○의 담배사업 체계 및 규제

가) ○○은 연초전매법을 제정하여 담배사업에 대한 국가 전매전영제도(專賣專營制度)를 전면 확립하였는데, 연초전매법의 입법 취지는 연초전매 관리의 실행, 연초전매품의 생산과 경영의 계획적 진행, 연초제품의 품질 제고 및 소비자 이익의 보호, 국가 재정수입의 확보를 위한 것이다. 연초전매라 함은 국가가 연초전매품의 생산, 판매와 수입·수출 업무에 대하여 독점적 경영, 획일적 관리를 실행하는 제도로서 국가가 연초전매품의 생산, 판매, 수출입에 대하여 법에 따라 전매관리 및 연초전매허가증제도를 실시한다. 법적 규제대상이 되는 연초전매품은 쉐련, 시가, 살담배, 복고담뱃잎, 담뱃잎, 쉐련종이, 담배필터, 연용사속, 연초전용기계를 말한다. 위 법에 따라 ○○ 국무원(國務院) 산하 국가연초전매국(國家煙草專賣局)과 ○○연초총공사(○○煙草總公司)는 전국 담배사업의 인원, 재정, 물자, 생산, 공급, 판매, 국내외 무역에 대하여 집중적, 획일적 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나) ○○담뱃잎세감정조례는 연초 잎을 수매한 금액을 근거로 세금을 부과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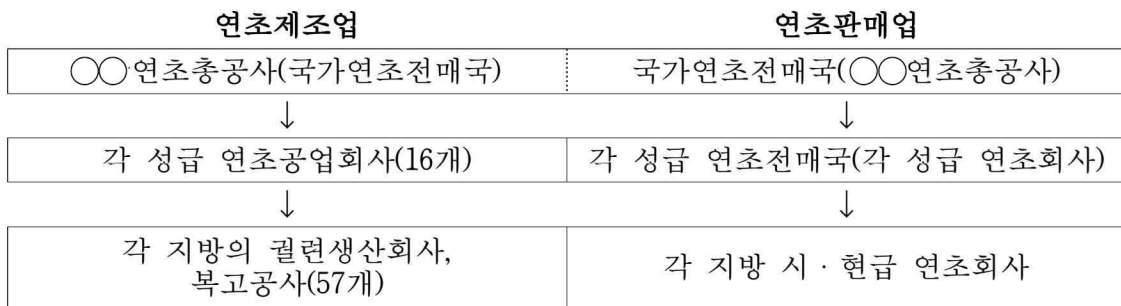


위해 2006. 4. 28.부터 시행되었는데, 연초 잎을 수매하는 회사가 담뱃잎세의 납세자가 되고, 위 조례에서 담뱃잎이란 자연건조 담뱃잎과 열건조 담뱃잎을 말한다.

다) 한편, ○○ 연초전매품의 수입·수출은 각 성급 연초공업기업에 속한 수입·수출부문(또는 기업), 전국 각 항구에서 설립된 수입·수출기업 및 F유한회사를 통하여 이루어지나 위 모든 기업은 일률적으로 모회사인 국가연초전매국(○○연초총공사)의 지도를 받으므로 연초전매품의 수입·수출 면에서도 전면적인 통제를 유지하고 있다.

[○○ 담배사업(연초제조업과 연초판매업) 조직 체계도]

○○○○공화국 국무원



3) E공사와 B사 사이의 원료 공급계약 관련

가) B사의 업무 및 사업분야 등

(1) B사는 2011. 10. 18.경 설립되어 2012. 10.경 ○○ 연초전매국으로부터 연초폐기물 처리업체로 승인받았다. B사는 2012. 10.경 담배폐기물 처리시설로 승인되었는데, 회사 홈페이지의 소개 자료, 회사 홍보 자료 등에는 담뱃잎의 주맥 부분을 가리켜 Stem으로 표시하면서 담배폐기물로서 니코틴을 추출하는 원재료라 설명하였고, 그 외 나머지 부분은 비료 생산에 사용된다거나 니코틴 외에 '바이오살충제(bio-pesticide), 유기 비료 등을 다룬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회사의 장점' 부분에서는 '충분한 원재료'라는 소제목 하에 '담배폐기물은 연초전매법(tobacco monopoly law)의 적용을 받습니



다. 당사는 ○○○성의 폐기 담배처리 센터이며, 합법적으로 원재료를 얻을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하고 '니코틴 추출 폐기물(extracted waste)과 폐기갈간(廢棄秸秆, crop straw waste)을 사용하여 농산재료 제품(agricultural material products)을 만든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위 회사가 생산하는 니코틴 제품 원액은 니코틴 담뱃잎 추출물(Nicotine tobacco leaf extract)'이라고 설명하면서 연초 잎의 잎맥 사진을 게재하였다.

(2) B사의 2016년 공개전양설명서(감사보고서와 유사한 서류이다)에서는 B사의 주요사업으로 '회사는 주로 담뱃잎(烟叶, 연엽), 연경(烟梗) 등 담배폐기물을 이용하여 니코틴을 추출하며, 주요영업업무는 니코틴 생산, 연구개발 및 판매이다', '회사의 주요제품인 니코틴의 응용분야는 전자담배, 살충제, 의약품제조 등 세가지 분야이다'라고 기재하고 있다. 또한 위 설명서의 B사의 영업수익 현황을 보면 2014년에서 2016년 상반기까지 주요영업업무수익이 회사 수익의 87.83%에서 95.87%를 차지한다. 한편, 위 설명서에 따르면 B사가 연초 대줄기를 별도로 구매한 내역은 나타나지 않는다.

(3) B사는 2014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매년 E공사와 '폐기연경처리협약' 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 ○○시(○○市) 연초전매국의 확인·서명을 받아 폐기연경(廢棄烟梗)을 공급받아 왔다. 위 협의서의 주요 내용은 'E공사가 B사에 폐기연경을 제공하면 B사는 지정된 장소에서 그 형태를 훼손하고 성질을 변환한 후 출고할 수 있고, 분쇄 후의 가루분말 출고 후의 모든 책임을 지며, 미분쇄 폐기연경과 재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 연초전매법 등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위 폐기연경처리협약의 내용에는 '연초 대줄기'가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4) 또한 B사와 E공사 사이에 작성된 원료공급계약서인 '2018 고계폐기연초분말소수협약(이하 '이 사건 구매계약서'라 한다)'는 E공사가 B사에 폐기연초분말계를 공



급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데, 위 서류에는 '폐기연초분말계는 ○○(○○) 재진조 공장의 생산과정 중에 발생하는 폐기연경(廢棄烟梗), 제진(除塵) 담뱃재 등 담배폐기물을 설비를 통해 40mesh¹⁾ 이하로 분쇄한 후, 회수하여 이용할 수 없는 담배 폐기 분말을 말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B사의 입장

(1) B사는 이 사건 니코틴이 문제되자 2019. 7. 20.경 '이 사건 니코틴의 원재료는 연경(연초 대줄기)이다'는 취지의 성명서를, 2020년에도 '이 사건 니코틴의 원재료는 연경(연초 대줄기)이고, ○○○○에 공급하는 니코틴에는 주맥과 지맥이 있지 않다. 대줄기를 번역할 어휘가 없어서 '연경(STEM)'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다'는 취지의 성명서를 각 발표하였다.

(2) B사는 위 성명서와 관련하여 원고 외 다른 업체에 대한 관세조사 과정에서 ○○청에게 "폐기연경 추출 특허는 단지 실험실 기술 특허로 경쟁 진입장벽을 높이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라고 회신하였다. 또한 B사는 위 관세조사에서 ○○청에게 "니코틴 생산 원재료로 사용하는 '연경(갈경)'은 '연경(stem)'과 동일한 것이고, 위 연경은 E공사로부터 공급받고 있으며, 다른 원재료는 없다. 니코틴의 원재료는 갈경이고, 연초의 가장 굵은 줄기이다. 상세한 내용은 회사의 영업비밀이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상세하게 공표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기도 하였다.

다) ○○ ○○청은 2020. 4. 28. ○○청의 B사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취지로 답변을 보냈다.

1) 체의 눈이나 가루 입자의 크기를 나타내는 단위. 40mesh는 1제곱인치당 그물코 또는 입자의 수가 40개인 것을 의미한다.



- ○○ 내 회사가 니코틴 또는 담배를 제조, 유통하기 위해서는 정부로부터 허가(License)를 취득해야 하며 니코틴 생산은 국가 판매 독점국의 감독을 받아야 함. 우리 조사에 따르면 B사는 니코틴이나 담배를 제조, 배급, 국외 수출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음(니코틴 제품 허가과 수출 증명서 첨부).
- 조사 결과, B사는 담배 줄기(tobacco stems)를 수집하고 줄기(stems)로부터 니코틴을 생산하도록 허가 받았음(지방 담배관할기관이 발급한 담배 줄기 수집 허가증 첨부).
- B사에 따르면, 생산하는 모든 니코틴은 담배 줄기(tobacco stems)로부터 생산된 것임(생산과정과 B사의 확인서 첨부).

라) E공사는 ○○ ○○총서(우리나라의 관세청에 해당하는 기관이다)의 질의에 대하여 2020. 9. 23. 'E공사는 주로 담뱃잎을 탈엽기를 이용하여 물리적인 방식으로 잎 담배와 연경으로 분리하여, 슬라이스 담뱃잎, 길고 짧은 연경, 담뱃잎 부스러기, 폐기연경 등 4가지 형태의 상품을 만든다. 그중 슬라이스 담뱃잎, 길고 짧은 연경, 담뱃잎 부스러기는 궤련기업이 회수해 가고, 폐기연경, 담배가루 등 연초 폐기물을 전부 공장 내에서 40목 크기로 분쇄 후 B사에 제공하였다'고 답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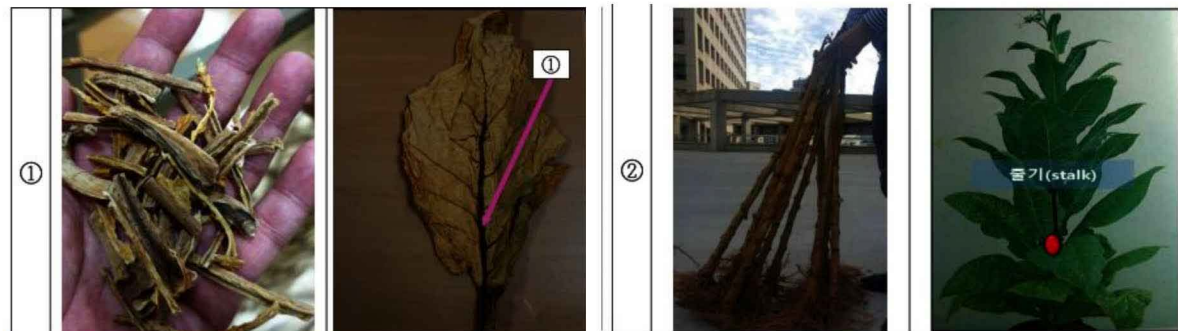
마) ○○청은 주○○○○공화국○○○○대사관(이하 '주○○대사관'이라 한다)에 담배 잎줄기(연경, 烟梗)에 대한 정의, 관련 법령 등에 관한 분석을 요청하였는데, 이에 대해 주○○대사관은 2020. 11. 18.자 '○○의 담뱃잎 수매제도 및 담뱃잎줄기 검토 보고'와 위 보고서에 첨부한 검토서를 통해 E공사가 가공하여 발생한 폐기물의 성질 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다.

- ○○담배전매법과 ○○담배잎세잠정조례에 따르면, 국가의 전매대상 및 담배세 부과대상인 담뱃잎(烟叶)이란 태양건조 담뱃잎(晾晒烟叶)과 열건조 담뱃잎(烤烟叶) 한정되며, 담배 줄기는 포함되지 않음.
- E공사의 영업범위는 담뱃잎 위탁가공으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관계부처의 승인 없이는

담뱃잎(烟叶) 이외의 원료를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할 수 없음

- 따라서 E공사에서 담뱃잎 재건조가공(复烤烟叶) 후에 발생한 폐기물은 담뱃잎자루(烟柄)와 담배 잎맥(烟脉, 烟梗) 및 담배 잎편(烟片) 부스러기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 검토결과를 종합해 볼 때, 담뱃잎의 재건조가공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인 담배 잎맥(烟脉, 烟梗)을 원료로 하여 제조된 니코틴 용액은 담배소비세법상의 담뱃잎을 원료로 제조된 니코틴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됨

바) ○○청은 ○○ ○○총서에 B사와 E공사 사이에 2017년경에 체결된 '폐기연경처리협약' 계약, 연초의 잎맥(그림①)과 연초의 줄기(그림②, stalk)를 사진으로 제시하며 폐기연경 및 연경에 관하여 질의하였고, ○○ ○○총서는 2021. 2. 26.과 2021. 3. 3.에 위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취지로 답변하였다.



[2021. 2. 26. 답변]

1. 2011년 10월에 설립된 B사는 주로 식물 중간재를 추출·판매(미생물 폐기물, 미생물 접종원, 유기비료, 셀레늄비료, 미량원소, 수용성 비료)하고 담배향(맛) 연구·생산·판매하고 있습니다. ...(중략)...
2. 2014. 4. ○○○연초전매국(Hubei Tobacco Monopoly Bureau)은 생물 살충제와 생물 유기비료 생산에만 사용되도록 B사의 폐기연경(waste tobacco stems)(압착 후 형태 파괴) 처리를 승인해주었습니다. 연간 총량은 6,500톤 미만이어야 합니다(단계별 이행). 또한 B사는 ○○○○공화국의 연초전매법 및 업계관리규정을 충실히 준수해야하며 연초전매국의 관리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3. 2012. 1.부터 2019. 8.까지, E공사는 폐기연경(waste tobacco stems) 33140.46 톤을



B사에 공급하였고 2019. 9. 이후부터는 더 이상 공급하지 않았습니다.

[2021. 3. 3. 답변]

B사와 폐기연경처리협의를 체결한 E공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폐기연경(廢棄烟梗)은 그림 ①을 의미한다.

사) ○○ 사법부는 2024. 6. 18. 법원행정처에 ① 이 사건 구매계약서, ② 니코틴 생산 가공 및 기술 관리 규범에 대한 호북성 지방표준, ③ B사가 2024. 2. 1. 작성한 'B사의 천연 니코틴 추출에 대한 설명'이 포함된 국외한중조약 증거조사 회신서(이하 '국외 증거조사결과'라 한다)를 송부하였다.

위 각 증거 중 ③의 요지는 ㉠ B사가 연간(烟杆)과 연경(烟茎)을 원료로 하는 추출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 B사가 제조하는 니코틴의 원료는 ㉢ 재건조공장(復烤厂), 담배회사에서 구매한 담배 폐기물인 연경(烟茎)과 ㉣ J조합에서 구매 및 회수한 연간(烟杆)이며, ㉤ B사가 연경(烟茎)에서 추출한 제품은 ○○ 국내 고객이 사용하도록 공급하는데, 최종적으로 유기 비료로 이용되고, ○○○○으로 수출하는 니코틴의 원료는 연간(烟杆)과 연경(烟茎)이라는 것이다.

4) ○○청장은 2019. 11. 19. ○○부장관을 통하여 주○○○○○○○총영사관에 ○○성 연초연엽공사와 ○○정원생물과기유한공사 간 체결된 '연초폐기물소각협약서'의 진위 여부 및 소각협약서상 연초 줄기가 어느 부분을 뜻하는지 문의하였는데, 2019. 11. 28. ○○ ○○성인민정부외사판공실은 주○○○○○○○총영사관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회신하였다.

○○성 상관부문 조사결과, 첨부 <연초폐기물소각협약>는 허위로 효과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담배전매국 발행 연초폐기물관리법의 통지관련> 규정에 따라 “연초의 줄기(烟梗)”는 구체적으로 초벌건조한 담배잎의 주맥과 지맥으로서, 재건조 가공 후의 부산물이며, 장



줄기(대략적인 길이는 20mm)와 단줄기(대략적인 길이는 20mm 안팎): “경말(줄기 끝)”은 물리적 형태변화 후 치수 0.425mm의 가루분말 물질입니다.

5) 연초 대줄기로부터 니코틴 추출이 가능한지 여부 및 그 효율성

가)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니코틴 함량이 연초 잎은 0.5%~5.0%로, 연초 줄기는 0.06%~1.15%로, 연초 뿌리는 0.08%~0.75%로 확인되었다.

나) 국내 담배의 제조와 판매를 담당하는 주식회사 G는 피고의 요청으로 담배 잎맥과 연초 대줄기의 각 니코틴 수율(收率, 원자재에 어떤 화학적 과정을 가하여 원하는 물질을 얻을 때, 실제로 얻어진 분량과 이론상으로 기대했던 분량을 백분율로 나타낸 비율을 말한다)을 측정하였는데 그 결과 니코틴을 연초 대줄기로부터 추출하는 경우 0.03%, 담배 잎맥에서 추출하는 경우 0.39%로 나타났다.

다) ○○○○기술원 H 박사의 2017. 4. 10.자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담배 줄기는 잎에 비하여 훨씬 적은 니코틴 함량을 가지고 있고, 건조 및 분쇄·가공처리가 어려워 니코틴 추출에 있어 경제성·기술적 측면에서 큰 난점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후 H 박사는 2024. 7. 1. 새로운 연구보고서를 통해 담배 줄기에서 니코틴을 추출하는 것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다른 의견을 밝혔다.

2. 니코틴 추출의 경제성: 담배잎 대 담배 줄기

결론

이 단순화된 ①② 두가지 시나리오에서 추출 과정과 비용이 동일하게 효율적이라고 가정할 경우는 니코틴 1kg을 얻는 데 드는 비용은 잎은 227,275원 줄기는 0원입니다.

그러나, 추출하는 비용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처리하는 줄기량이 잎보다 크므로, 추출 비용 면에서 담배 줄기 추출의 경우 담배잎보다 더 많은 양의 추출 용매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니코틴 함량 기준 3.56배 내지 4.44배 용매 필요).

그러나, 추출 용매는 대부분 매우 저렴하고(킬로그램당 500원 내외), 특히 추출 용매는 계



속 재사용되므로 초기 용매 구입 비용만 더 들어갈 뿐입니다. 담배잎 구매 가격과 추출 용매 비용을 고려하면, 줄기 추출이 잎 추출과 비교하여 경제성이 유리하거나 비슷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경제적 타당성은 실제로 추출 프로세스의 구체적인 비용과 효율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줄기의 무상 구입 비용과 가능성을 고려할 때, 줄기에서 니코틴을 추출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적합하고 잠재적으로 더 지속 가능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과 같은 과학 기술 발전에 따라, 추출 방법이 더 높은 효율성을 위해 최적화된 경우 더욱 그럴 수 있습니다. 또한 환경적인 측면에서, 폐기물 활용이므로 보다 지속 가능하고 환경 친화적인 관행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다. 이 사건 니코틴의 원료에 연초의 잎이 포함되었는지 여부

앞서 채택한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물품에 사용된 이 사건 니코틴의 원료에 연초의 잎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이를 뒤집기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물품에 사용된 이 사건 니코틴이 담배사업법 제2조의 담배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연경(烟梗)이 연초 대줄기를 의미하는 것인지 여부

가) 연경(烟梗)의 의미와 관련하여, ① E공사는 'B사에 제공하는 폐기연초분말은 폐기 담배 잎맥, 제진 담뱃재 등 연초 폐기물이다'라고 답변한 점, ② ○○ ○○총서는 2021. 3. 3. 연초의 잎맥 부분을 가리키며 폐기연경이라고 답변한 점, ③ ○○의 백과사전에서 '연초 잎의 두껍고 단단한 엽맥으로 잎 무게의 약 25~30%를 차지'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담배용어사전의 설명도 이와 유사한 점, ④ '○○성담배전매국 발행 연초 폐기물관리법의 통지' 관련 규정에 따르면 '연초의 줄기'는 초벌건조한 담뱃잎의 주맥



과 지맥, 즉 잎맥을 의미하는 것인 점, ⑤ ○○은 전국 담배사업의 인원, 재정, 물자, 생산, 공급, 판매 등을 집중적·획일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므로 관련 제품 생산 공정 및 사용되는 용어도 통일적일 것으로 보이며, ○○ 담배 산업계에서 '연경(烟梗)'의 의미가 엇갈리거나 그 용례와 관련하여 혼선이 빚어진 상황을 찾아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 ○○에서 '연경(烟梗)'은 통상 담배 잎맥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일 뿐, 그와 달리 연경이 대줄기를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된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거기에 더해 국외 증거조사결과에 기재된 연간(烟杆)이 연초의 대줄기를 의미하는 것은 분명한 것으로 보이고²⁾, 앞서 본 바와 같이 연경(烟茎)이 담뱃잎을 사용하는 담배 회사 등에서 발생한 담배 폐기물인 점에 비추어 보아도, 연경은 연초의 잎맥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나) 담배제조회사인 I는 ○○○○과 ○○에서 각 출원한 연초줄기처리방법 특허에서 중국어로 "烟草莖(烟梗)[연초경(연경)]"으로 표기하고 있어 연경(烟梗)이 연초 대줄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드나, I는 '연초줄기 처리 방법에 관한 특허'를 출원하면서 0009 문단에서 '莖'의 의미를, 0010 문단에서 '梗'의 의미를 별도로 설명하였고, 연경은 연초 잎맥을 지칭하는 것으로 기재하였다. 원고는, 법규의 효력을 갖는 HS해설서에서 줄기를 stalks와 stems을 모두 사용하면서 주맥을 midribs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 stem은 대줄기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stem이라는 표현은 중국어가 아닌 영어이고, B사 등이 폐기연경의 의미에 관하여 설명하는 과정에서 부기한 표현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앞서 B사가 E공사로부터 공급받

2) 잎맥을 포함한 담뱃잎은 중국 연초전매법에 따라 엄격히 규율되고, 담배재배농가나 J조합에서 담뱃잎에서 잎맥을 분리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J조합이 임의로 담뱃잎이나 그 잎맥을 B사에 판매할 수 없다는 점에서도, J조합이 B사에 판매한 연간(烟杆)은 위 연초전매법의 규율을 받지 않는 연초의 대줄기로 봄이 타당하다.



는 원재료인 '폐기연경'의 의미를 살펴본 이상 더 나아가 살피지 않는다.

2) B사가 공급한 이 사건 니코틴에 대한 판단

가) B사는 니코틴 생산, 연구개발 및 판매를 주요영업업무로 하고, 니코틴이 영업수익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B사가 연초의 대줄기에서만 니코틴을 추출하였다면 B사에게는 원재료인 연초의 대줄기 매입이 매우 중요한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B사에 대한 공개전양설명서, B사와 E공사 사이에 체결된 '폐기연경처리협약', E공사의 2020. 9. 23.자 답변에는 B사가 E공사로부터 폐기연경을 매입한다는 내용만 나타나 있을 뿐, 별도로 연초 대줄기를 매입한다는 명시적인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 ○○총서는 E공사에 내용을 확인한 후 2021. 3. 3. ○○청에 E공사가 B사에 재료로 공급한 폐기연경은 연초의 잎맥 부분이라고 답변하였고, B사 스스로도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니코틴용액의 원료는 연간(烟杆)과 연경(烟茎)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연간(烟杆)은 연초의 대줄기, 연경(烟茎)은 연초의 잎맥을 의미한다.

다) 또한 B사에 니코틴 원료를 공급한 E공사는 그 영업범위가 '담뱃잎 위탁가공'으로 한정되어 있고, 관계부처의 승인 없이는 담뱃잎 외의 원료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담뱃잎 가공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담배 잎자루, 담배 잎맥, 담배 잎편 부스러기 등 담뱃잎의 일부라고 보일 뿐 연초 대줄기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E공사로부터 원료를 받아 이 사건 니코틴을 제조한 B사의 홈페이지 또는 회사 소개 PPT 자료에도 니코틴 원료로 담배 잎맥에 해당하는 부분을 지칭하여 'stem'이라고 표시하고 있을 뿐 연초 대줄기를 원료로 한다는 기재는 없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충분한 원재료'라는 소제목 하에 '담배폐기물은 연초전매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당사는 ○○○성의 폐기 담배처리 센터이며, 합법적으로 원재료를 얻을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B사가 E공사로부터 원재료를 공급받는다고 답변한 점, B사의 공개전양설명서에도 담배 잎맥 등을 사용하여 니코틴을 추출한다고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B사는 이 사건 니코틴을 생산하면서 담배 잎맥을 포함한 담뱃잎 폐기물 부분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B사의 회신에 '니코틴의 원재료는 갈경으로서 연초의 가장 굵은 줄기이고 홈페이지의 사진과 자료는 단지 회사 홍보를 위한 것이다'라는 취지의 기재만으로는 그와 달리 이 사건 니코틴 제조에 연초 대줄기만을 사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라) B사가 2019. 7. 20.경 발표한 성명서나, 관세조사 당시 피고에게 제출한 답변 및 국외 증거조사결과에 포함된 성명서에 의하면 B사는 연초 대줄기로 니코틴을 생산하여 공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위 성명서는 B사가 생산한 이 사건 니코틴의 원재료에 관한 문제가 불거진 이후에 비로소 작성된 것일 뿐만 아니라, B사는 위 관세조사 답변 과정에서 '니코틴 생산 원재료로 사용하는 폐기연경(廢棄烟梗)은 E공사와의 폐기연경처리협약에 따라 공급받고 있고, 그 외에 다른 원재료는 없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던 점, 위와 같은 성명서의 내용은 B사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회사 소개자료, 홈페이지, 공개전양설명서 등을 통해 그 동안 밝혀온 사업의 내용과도 배치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그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한편, 원고는 위 국외 증거조사결과에 첨부된 사진을 들어 해당 사진이 담배 대줄기에서 이 사건 니코틴을 추출하는 장면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해당 사진은 이 사건 니코틴의 제조와는 무관한 시기에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데다가 그 일련의



과정이 그대로 담겨 있는 것도 아닌 점,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B사는 ○○청에게 "폐기연경 추출 특허는 단지 실험실 기술 특허로 경쟁 진입장벽을 높이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고 회신하였던 점, ③ 설령 B사가 대줄기로부터 니코틴을 추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하고, 위 사진이 담배 대줄기로부터 니코틴을 추출하는 장면을 실제 촬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B사가 그러한 기술을 상업적으로 적용하여 이 사건 니코틴을 실제 생산하였는지는 별개의 문제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이를 가지고 이 사건 니코틴이 담배 대줄기로부터 추출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원고는, 중국 ○○청 답변은 'B사가 생산하는 모든 니코틴은 담배 줄기로부터 생산된 것이다'라는 내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니코틴이 담뱃잎이 아닌 담배 대줄기로부터 추출된 것이라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중국 ○○청 답변 중 원고가 주장하는 해당 부분은 'B사에 따르면, 생산하는 모든 니코틴은 담배 줄기로부터 생산된 것임.'인데, 이는 B사의 입장을 그대로 옮긴 것에 불과하여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라고 볼 수 없다.

마) 연초 대줄기에서 니코틴을 추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해 보이기는 하나,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연초의 잎의 니코틴 함량은 0.5%~5.0%인 반면, 연초 줄기의 니코틴 함량은 0.06%~1.15%에 불과하고, 연초의 잎맥에서 추출하는 경우의 니코틴 수율은 0.39%인 반면, 연초 대줄기에서 추출하는 경우의 니코틴 수율은 0.03%에 불과한 점, ② 이 사건 처분 이전 작성된 2017년경 ○○○○기술원 연구보고서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담배 줄기에서 니코틴을 추출하는 데 있어 경제적·기술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했던 점, ③ 이처럼 연초 대줄기에서 니코틴을 추출하는 것은 연초 잎맥에서 니코틴을 추출하는 것보다 경제적 효율이 현저히 낮는데, B사가 E공사로부터 공급받아 대



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폐기연초분말(연초 잎맥 폐기물로 만들어진 것으로 연초 대줄기에 비해 니코틴 추출률이 훨씬 높다)이 아닌 연초 대줄기에서만 니코틴을 추출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④ 원고가 근거로 들고 있는 H 박사의 2024년 연구 보고서, K 박사의 의견서, L연구소 실험 결과, 감사원 의견서등은 이 사건 물품이 수입된 이후에 작성된 것이거나 작성 시기를 알 수 없는 것이고, 그 내용 또한 일정한 조건 하에서 담배 대줄기에서 추출한 니코틴이 보다 경제성이 있을 수 있다는 취지에 불과한 점, ⑤ 원고가 드는 관련 사건의 감정결과에 의하더라도 줄기에서 추출된 니코틴 함량(1.28%)이 담뱃잎에서 추출된 니코틴 함량(3.71%)보다 현저히 적다는 결론은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B사가 이 사건 니코틴을 연초의 대줄기에서만 추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바) ○○연초총공사는 연초 잎을 기준 중량(50kg)에 따라 등급별로 가격을 정하여 수매하고 있고, ○○담뱃잎세잠정조례에 따라 이와 같이 수매한 금액의 20%를 세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연초총공사로서는 수매 가격 및 조세의 증가라는 이중 부담으로 인하여 대줄기를 포함한 중량을 기준으로 수매금액을 산정할 이유가 없고, 연초 잎의 중량만을 기준으로 수매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성 연초연엽공사도 주○○○○○○총영사관의 질의에 대하여 연초 잎 이외 부분은 구매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바 있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농가에서 줄기절단법에 따라 연초 잎과 대줄기를 함께 수확을 한다고 하더라도, 연초점에서 수매하는 단계 이전에 연초 잎과 대줄기를 분리하는 작업이 이루어진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미 연초점에서 수매한 연초 잎을 가공, 재건조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E공사가 '연초 잎과 대줄기를 분리하는 작업을 한 뒤 남은 대줄기를 B사에게 납품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사정이다.

사) 원고는 B사가 농가에서 직접 연초 대줄기를 구매하기도 한다고 주장하면서 농가구매 영수증, ○○ 농민 성명서 및 진술서, B사의 전 직원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① 관세당국의 요구에 따라 원재료 구매계약 증빙으로 B사와 E공사 사이에 체결된 '2018 고계폐기연초분말소수협약'을 제출한 점, ② 원고가 제출한 B사 생산공정도에 따르면 니코틴의 원재료는 '연경(烟梗)'이라고 표기하고 있음에 반하여 원고가 이 사건에서 비로소 추가로 제출한 위 자료들에는 이와 달리 '연경(烟莖)', '갈간(秸秆)', '연갈간(烟秸秆)'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B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미 홈페이지를 통해 '니코틴 추출 폐기물(extracted waste)과 폐기갈간(废弃秸秆, crop straw waste)을 사용하여 농산재료 제품(agricultural material products)을 만든다'고 소개하였던 점에 비추어, 원고가 추가로 제출한 자료들이 니코틴 추출을 위한 원재료 구매 사실을 뒷받침하는 것인지, 아니면 농산재료 제품 생산을 위한 원재료 구매 사실을 뒷받침하는 것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점, ③ 원고 제출 영수증 중 일부는 2020. 11. 17.에 작성된 것이어서 이 사건 니코틴과 관련이 없고, 다른 영수증은 그 출처가 불분명한 점, ④ ○○ 농민 성명문·진술서 및 B사 전 직원인 'M' 작성의 사실확인서는 이 사건 니코틴의 원재료에 관한 문제가 제기된 이후 작성된 것이거나 작성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그 기재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증거들을 근거로 '농민들이 B사에게 담배 대줄기 부분을 공급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②항과 마찬가지로 B사는 이 사건 물품뿐만 아니라 폐기갈간(废弃秸秆) 등을 이용한 농산재료 제품을 만들기도 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위 증거들이 이 사건 니코틴이 담배 대줄기로부터 추출되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고 보기는 어



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아) 원고는 또한, B사의 기간별 니코틴 생산량을 근거로 B사가 2017년 39.6톤, 2018년 38.6톤, 2019년 32.2톤, 2020년 44.2톤의 니코틴을 생산하였다면서 E공사로부터 연초박(폐기연경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을 공급받은 2018. 4.부터 2019. 8.까지의 기간에 니코틴 생산량이 유의미하게 변동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E공사는 2012. 1.부터 2019. 8.까지 B사에 폐기연경을 공급하였고, 그 이후에는 공급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 ○○총서의 2021. 2. 26.자 회신, B사와 E공사 사이에 체결된 폐기연경처리협약의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증거 중 2017년, 2018년의 니코틴 생산량은 이 사건에서 별다른 의미를 갖지 못한다. 다만 E공사가 폐기연경 공급을 중단한 2019. 8. 이후에 B사의 니코틴 생산량에 관하여 살펴건대, ① B사는 E공사로부터 연초 폐기물을 제공받은 기간에 한정하지 않고 연초 잎 폐기물을 공급받아 이 사건 니코틴을 제조하였음을 판매 사이트 등을 통하여 스스로 밝히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점, ② 원고가 제출한 갑 제62호증은 그 출처가 불분명한 점 등을 고려하면, 갑 제62호증이 B사가 연초의 대줄기에서 니코틴을 추출한다는 사정을 뒷받침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자) 원고는, ○○은 연초전매법을 제정하여 연초 재배 단계에서부터 정부가 적극 개입·통제하고 있으므로 B사가 연초 잎맥에서 니코틴을 추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① ○○ ○○청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20. 4. 28. ○○청에 'B사는 니코틴이나 담배를 제조, 배급, 국외 수출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다'고 회신한 점, ② ○○ ○○총서는 2021. 2. 26. 피고에게 '○○○연초전매국이 생물 살충제와 생물 유기비료 생산에만 사용되도록 B사의 폐기연경(waste tobacco stems)(압착 후 형태 파기) 처리를 승인해주었다'고 회신하였는데, B사는 홈페이지에서 B사가 생산한 니



코틴의 용도로 바이오살충제(bio-pesticide) 등을 제시하였던 점, ③ ○○의 연초전매법은 자연건조 담뱃잎과 열건조 담뱃잎만을 규율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B사가 폐기연경에서 이 사건 니코틴을 추출하는 것이 ○○의 기존 담배 규제 체계 아래에서 불가능해 보이지는 않는다. 설령 B사가 폐기연경으로 니코틴을 생산하는 것이 ○○ 연초전매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B사가 폐기연경을 사용하여 니코틴을 생산하고 있지 않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차) B사는 갈간(秸秆)을 비료화하는 업체로 선정된 바 있고, 자사 홈페이지 등에서도 갈간(秸秆)을 이용하여 유기비료를 생산하고 있음을 홍보하고 있다. '갈간(秸秆)'은 '성숙한 농작물의 경(莖. 줄기)·협(叶. 잎) 부분의 총칭, 통상 밀, 벼, 옥수수, 감자류, 유채, 목화 사탕수수, 기타 농작물의 씨를 수확하고 남는 부분'을 의미하므로, B사가 '갈간(秸秆)'에서 니코틴을 추출하였다고 하여 연초 잎이나 연초 잎맥이 아닌 연초 대줄기에서만 니코틴을 추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원고는 B사가 니코틴 생산 과정에서 연초 대줄기만을 이용하였다는 취지의 증거로 갑 제43, 44호증(사진 및 동영상)을 제출하였으나, 위 증거가 이 사건 처분의 대상이 된 물품(이 사건 거래처가 2017. 1. 20.부터 2020. 6. 30까지 B사에서 생산된 쟁점 니코틴을 사용하여 제조한 이 사건 물품)을 제조할 당시에 촬영되거나 그때의 상황과 일치하는 영상이라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위 자료를 근거로 위 물품이 연초 대줄기만을 원료로 이용하여 추출된 것이라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카) 원고는 우리나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 사법부가 증거조사를 실시한 후 송부해준 '국외 한중조약 증거 회신서'와 그 조사를 위한 '조사범위 사전고지서'에 의하면 B사가 담배 대줄기로 니코틴을 생산하고 있음이 밝혀졌으므로 이 사건 물품의 원



료가 연초의 대줄기라는 사실이 증명된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위 '조사 범위 사전고지서'에는 ○○ 사법부가 조사할 범위에 대하여 사전고지하는 내용의 기재가 있을 뿐이고, 위 '국외 한중조약 증거 회신서'에는 E공사와 B사 사이의 이 사건에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B사의 설명문, B사의 연초전매생산기업 허가증, 원재료 공급과 관련된 계약서 등의 서류가 첨부되어 있을 뿐, 이 사건 물품의 원료가 연초 대줄기에서만 추출되었다는 사실을 ○○ 사법부가 확인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타) 원고는, ○○ 연초전매법 규정과 담배관련 법령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보고서, ○○○성 연초전매국 문서[2014] 2호, ○○ 연초전매국 담배전매 제품 폐기 관련 통지, ○○성 담배전매국 폐담배 전매품 폐기 관리 및 유통 관련 고시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에서 폐기연경으로 니코틴을 생산하는 것은 위법이므로, B사가 E공사에서 공급받은 폐기연경으로 니코틴을 생산한 것이 아니라, 따로 수급한 담배 대줄기로 니코틴을 생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 ○○총서와 ○○ 국가세무총국의 답변에 의하면 B사는 폐기연경의 처리 승인 및 연경으로부터 니코틴을 생산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은 점, ② ○○ 연초전매국 통지에서는 약정방식을 위반하여 니코틴을 생산하는 경우를 문제 삼고 있어, 니코틴 생산 허가를 받은 B사에는 처음부터 해당할 여지가 없는 점, ③ 연초전매국 고시는 제22조 제2항에서 불량폐기 원료 처리 과정 중 잔류물을 이용한 연초 추출물의 생산을 방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고시 제1조에서는 고시의 목적을 불량폐기연초전매품의 관리를 강화하고, 불량폐기연초전매품의 처분행위를 규범화하며, 위조불량담배의 제조에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어, ○○ 연초전매법상 연초전매품에



해당하지 않는 니코틴의 생산까지 제한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④ 만약 폐기연경으로부터 니코틴을 추출·생산하는 것이 ○○에서 위법하다면 B사로서는 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이 당연할 것인데, 오히려 홈페이지를 통하여 폐기연경으로부터 니코틴을 추출하고 있다는 사실을 홍보까지 하고 있는 점, ⑤ 설령 B사가 폐기연경으로 니코틴을 생산하는 것이 중국 법령 위반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B사가 폐기연경을 사용하여 니코틴을 생산하고 있지 않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B사가 E공사로부터 공급받은 폐기연경으로 니코틴을 생산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신뢰보호의 원칙 내지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 위반 여부

1) 관련 법리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먼저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대법원 2017. 11. 23. 선고 2014두1628 판결 등 참조), 행정청 내부의 재량준칙이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루어진 경우에 행정청은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청은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받게 된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두18964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앞서 채택한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부가 2016. 9. 29.경 담배사업법 제2조를 근거로 '연초의 잎에서 추출한 니코틴은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에 해당하고, 연초의 줄기·뿌리 부분에서 추출한 니코틴이면 담배사업법



상 담배에서 제외된다'는 취지의 질의 회신을 한 사실, ○○청이 2019. 11. 6.경 발표한 '액상형 전자담배 니코틴용액 등 수입통관 강화 방안'에서 '연초의 대줄기에서 추출한 니코틴의 경우 그에 관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만 수입신고를 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나) 그러나 위 ○○○○부의 회신은 담배사업법에서 정한 담배의 기준을 정당한 문언 해석에 따라 명확히 한 것에 불과할 뿐이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연초의 '잎' 중 잎몸 이외의 '잎맥', '잎자루' 등을 사용한 경우에는 담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표명한 것이 아니다.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물품의 원료에는 위 회신에서 담배에 해당한다고 명시한 잎맥, 잎자루 등 '연초의 잎'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이는 바, 위 회신을 근거로 이 사건 물품에 대하여 담배사업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보호가치 있는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청의 위 수입신고 수리 방침은 거래계약서, 제조공정별 제조사실 증빙자료, 제조자 허가증 등의 자료에 의해 담배사업법이 적용되지 않는 연초의 줄기나 뿌리만을 원료로 하고 있다는 점이 형식적으로 확인될 뿐만 아니라, 실질적 심사에 의해서도 그와 같은 자료들이 실제 사실과 부합한다는 점이 인정될 것을 전제로 하고 있음이 명백하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관련 서류만 갖추어 제출하면 그 내용의 진위 여부를 떠나 무조건 담배사업법상 담배가 아닌 것으로 인정하겠다는 취지의 의사표명으로 볼 수는 없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관련 자료의 진위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물품에 관한 수입 통관이 이루어져왔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물품이 담배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하는 구속력 있는 행정관행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다) 결국 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 내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부, ○○청



등이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물품이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 원고로 하여금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를 갖게 하였다고 볼 수 없고, 설령 원고가 주관적으로 그와 같은 신뢰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이를 법적 정당성을 지닌 합리적인 신뢰로서 보호가치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양○○

판사 송○○

판사 김○○



별지 1

피고 목록

1. ○○시장
2. ○○특별시장
3. ○○시장
4. ○○시장
5. ○○시장
6. ○○군수
7. ○○시장
8. ○○군수
9. ○○군수
10. ○○시장
11. ○○시장
12. ○○군수
13. ○○시장
14. ○○시장
15. ○○○시장
16. ○○○시장
17. ○○시장
18. ○○시장
19. ○○시장
20. ○○시장(○○구청장)
21. ○○군수
22. ○○시장
23. ○○시장
24. ○○시장
25. ○○시장
26. ○○시장
27. ○○시장
28. ○○군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1-27

29. ○○군수
30. ○○시장
31. ○○시장
32. ○○군수
33. ○○시장
34. ○○군수
35. ○○군수
36. ○○군수
37. ○○시장
38. ○○군수
39. ○○시장
40. ○○시장
41. ○○군수
42. ○○시장
43. ○○군수
44. ○○군수
45. ○○시장
46. ○○시장
47. ○○군수
48. ○○군수
49. ○○군수
50. ○○시장(○구청장)
51. ○○광역시장
52. ○○광역시장
53. ○○광역시장
54. ○○광역시장
55. ○○광역시장
56. ○○광역시 ○○군수
57. ○○광역시장
58. ○○군수
59. ○○군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1-27

60. ○○군수
61. ○○시장
62. ○○군수
63. ○○시장
64. ○○군수
65. ○○군수
66. ○○군수
67. ○○시장
68. ○○군수
69. ○○시장
70. ○○군수
71. ○○군수
72. ○○군수
73. ○○군수
74. ○○군수
75. ○○군수
76. ○○군수
77. ○○군수
78. ○○군수
79. ○○시장
80. ○○군수
81. ○○군수
82. ○○군수
83. ○○시장
84. ○○군수
86. ○○군수
87. ○○시장(○○구청장)
88. ○○군수
89. ○○시장
90. ○○시장
91. ○○군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1-27

92. ○○군수
93. ○○시장
94. ○○군수
95. ○○군수
96. ○○군수
97. ○○군수
98. ○○군수
99. ○○군수
100. ○○시장
101. ○○군수
102. ○○시장
103. ○○시장
104. ○○군수
106. ○○시장
107. ○○시장
108. ○○시장
109. ○○시장
110. ○○군수
111. ○○시장
112. ○○시장
113. ○○시장(○○구청장)
114. ○○시장
115. ○○시장
116. ○○시장
117. ○○시장
118. ○○시장
119. ○○○ 시장
120. ○○시장(○○구청장)
121. ○○군수
122. ○○군수
123. ○○시장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1-27

124. ○○군수

125. ○○시장

126. ○○군수

127. ○○군수



별지 2

처분 목록

연번	피고	처분날짜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합계
1	○○시장	230116	219,153,510	70,370,120	289,523,630
2	○○특별시장	230112	9,787,652,820	3,142,823,040	12,930,475,860
3	○○시장	230119	274,140,380	88,016,140	362,156,520
4	○○시장	230115	114,416,020	36,736,280	151,152,300
5	○○시장	230116	119,212,830	38,273,350	157,486,180
6	○○군수	230131	49,925,630	16,029,410	65,955,040
7	○○시장	230216	418,928,950	134,477,270	553,406,220
8	○○군수	230215	74,791,810	24,021,400	98,813,210
9	○○군수	230116	85,922,700	27,593,300	113,516,000
10	○○시장	230116	302,041,090	96,979,450	399,020,540
11	○○시장	230113	58,515,130	18,787,940	77,303,070
12	○○군수	230119	72,657,430	23,338,850	95,996,280
13	○○시장	230115	908,064,590	291,527,120	1,199,591,710
14	○○시장	230116	442,097,000	141,841,800	583,938,800
15	○○○시장	230217	581,485,420	186,639,290	768,124,710
16	○○○시장	230210	122,070,750	39,195,040	161,265,790
17	○○시장	230221	838,399,290	269,206,390	1,107,605,680
18	○○시장	230210	879,410,400	282,405,120	1,161,815,520
19	○○시장	230115	884,903,010	284,145,260	1,169,048,270
20	○○시장 (○○구청장)	230126	512,354,840	164,495,690	676,850,530
21	○○군수	230221	139,316,850	44,711,980	184,028,830
22	○○시장	230120	145,929,130	46,863,730	192,792,860
23	○○시장	230131	110,102,690	35,356,730	145,459,420
24	○○시장	230126	312,797,420	100,414,180	413,211,600
25	○○시장	230115	746,397,250	239,560,550	985,957,800
26	○○시장	230116	198,600,780	63,721,660	262,322,440
27	○○시장	230114	348,380,680	112,082,410	460,463,090
28	○○군수	230117	64,492,160	20,714,600	85,206,760
29	○○군수	230117	65,942,110	21,186,100	87,128,210
30	○○시장	230120	122,446,740	39,319,720	161,766,460
31	○○시장	230113	151,488,570	48,633,130	200,121,700
32	○○군수	230116	27,691,220	8,892,400	36,583,620
33	○○시장	230210	358,293,090	115,035,820	473,328,910
34	○○군수	230116	99,593,140	31,984,250	131,577,390
35	○○군수	230112	40,649,720	13,053,100	53,702,820
36	○○군수	230130	46,293,030	14,867,460	61,160,490
37	○○시장	230207	500,572,320	160,762,930	661,335,250
38	○○군수	230116	28,329,860	9,098,740	37,428,600
39	○○시장	230116	146,861,840	47,156,320	194,018,160
40	○○시장	230127	106,372,180	34,163,770	140,535,950
41	○○군수	230117	63,991,000	20,549,350	84,540,350
42	○○시장	230113	187,589,120	60,245,670	247,834,790
43	○○군수	230116	54,724,720	17,575,470	72,300,190
44	○○군수	230112	16,103,080	5,171,830	21,274,910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1-27

45	○○시장	230112	122,310,220	39,279,850	161,590,070
46	○○시장	230113	127,952,050	41,114,090	169,066,140
47	○○군수	230113	52,549,740	16,867,360	69,417,100
48	○○군수	230113	56,112,250	18,018,900	74,131,150
49	○○군수	230113	33,304,930	10,694,710	43,999,640
50	○○시장 (○○청장)	230117	589,117,700	189,174,790	778,292,490
51	○○광역시장	230113	1,509,295,430	484,600,450	1,993,895,880
52	○○광역시장	230130	2,188,165,320	702,769,350	2,890,934,670
53	○○광역시장	230202	1,491,097,820	478,817,790	1,969,915,610
54	○○광역시장	2301	3,217,192,420	1,033,198,430	4,250,390,850
55	○○광역시장	230113	1,051,084,650	337,605,140	1,388,689,790
56	○○광역시 ○○군수	230206	286,682,320	92,046,110	378,728,430
57	○○광역시장	230112	3,024,238,840	970,907,530	3,995,146,370
58	○○군수	230113	35,970,650	11,548,240	47,518,890
59	○○군수	230116	68,911,720	22,121,470	91,033,190
60	○○군수	230116	27,946,610	8,975,840	36,922,450
61	○○시장	230223	167,431,430	53,760,720	221,192,150
62	○○군수	230119	24,147,310	7,754,300	31,901,610
63	○○시장	230113	113,851,640	36,544,410	150,396,050
64	○○군수	230113	40,396,520	12,970,690	53,367,210
65	○○군수	230113	80,501,030	25,843,050	106,344,080
66	○○군수	230116	45,489,380	14,607,340	60,096,720
67	○○시장	230116	261,207,800	83,871,460	345,079,260
68	○○군수	230202	40,265,710	12,937,020	53,202,730
69	○○시장	230116	326,245,590	104,745,900	430,991,490
70	○○군수	230117	94,365,690	30,305,750	124,671,440
71	○○군수	230116	71,401,030	22,924,460	94,325,490
72	○○군수	230120	49,650,950	15,925,010	65,575,960
73	○○군수	230120	41,732,730	13,391,660	55,124,390
74	○○군수	230116	42,483,990	13,638,100	56,122,090
75	○○군수	230206	32,166,180	10,329,720	42,495,900
76	○○군수	230116	86,830,230	27,873,560	114,703,790
77	○○군수	230116	55,215,530	17,728,810	72,944,340
78	○○군수	230120	58,180,080	18,680,680	76,860,760
79	○○시장	230118	321,487,180	103,253,730	424,740,910
80	○○군수	230116	29,348,600	9,424,840	38,773,440
81	○○군수	230113	60,374,710	19,386,030	79,760,740
82	○○군수	230207	106,910,940	34,325,040	141,235,980
83	○○시장	230118	301,129,030	96,692,670	397,821,700
84	○○군수	230407	32,130,650	10,310,980	42,441,630
85	○○시장 (○○구청장)	230116	629,462,970	202,111,230	831,574,200
86	○○군수	230113	20,501,040	6,583,380	27,084,420
87	○○시장 (○○구청장)	230201	1,122,167,000	360,399,790	1,482,566,790
88	○○군수	230203	62,166,700	19,954,750	82,121,450
89	○○시장	230115	159,295,600	51,148,780	210,444,380
90	○○시장	230201	255,046,990	81,893,300	336,940,290
91	○○군수	230117	69,209,180	22,225,000	91,434,180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1-27

92	○○군수	230116	62,573,910	20,088,400	82,662,310
93	○○시장	230116	445,534,560	143,075,060	588,609,620
94	○○군수	230116	101,706,800	32,658,950	134,365,750
95	○○군수	230131	44,921,180	14,423,310	59,344,490
96	○○군수	230113	38,337,340	12,309,310	50,646,650
97	○○군수	230126	39,791,180	12,777,860	52,569,040
98	○○군수	230117	50,794,520	16,312,440	67,106,960
99	○○군수	230116	57,054,710	18,321,310	75,376,020
100	○○시장	230113	161,227,140	51,774,770	213,001,910
101	○○군수	230116	132,637,740	42,571,050	175,208,790
102	○○시장	230112	936,056,670	300,481,010	1,236,537,680
103	○○시장	230120	261,586,360	83,993,610	345,579,970
104	○○군수	230306	38,298,090	12,295,710	50,593,800
105	○○시장	230302	88,763,200	28,511,620	117,274,820
106	○○시장	230309	292,207,440	93,829,980	386,037,420
107	○○시장	230125	606,678,990	194,741,320	801,420,310
108	○○시장	230405	368,057,230	118,138,660	486,195,890
109	○○시장	230418	893,991,300	286,888,500	1,180,879,800
110	○○군수	230418	113,889,980	36,572,120	150,462,100
111	○○시장	230412	257,721,290	82,741,080	340,462,370
112	○○시장	230412	288,699,260	92,662,260	381,361,520
113	○○시장 (○○구청장)	230411	1,120,320,290	359,704,790	1,480,025,080
114	○○시장	230412	191,080,920	61,347,680	252,428,600
115	○○시장	230406	248,290,720	79,738,290	328,029,010
116	○○시장	230412	547,825,090	175,843,300	723,668,390
117	○○시장	230411	43,699,620	14,036,570	57,736,190
118	○○시장	230411	261,840,880	84,042,740	345,883,620
119	○○○ 시장	230412	445,368,510	142,991,070	588,359,580
120	○○시장	230411	792,902,630	254,423,160	1,047,325,790
121	○○군수	230411	85,978,270	27,606,830	113,585,100
122	○○군수	2023. 1. 12.	107,874,120	34,639,810	142,513,930
123	○○시장	230410	84,550,640	27,150,230	111,700,870
124	○○군수	230410	23,398,800	7,516,570	30,915,370
125	○○시장	230406	121,851,140	39,124,820	160,975,960
126	○○군수	230410	95,104,020	30,553,160	125,657,180
127	○○군수	230405	33,510,870	10,760,580	44,271,450
				총 합계	64,716,938,410



별지 3

관계 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19조(근거과세)

- ①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을 때에는 해당 지방세의 과세표준 조사 및 결정은 기록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따라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세를 조사·결정할 때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지방자치단체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이나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으면 지방자치단체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덧붙여 적어야 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제3항의 결정서를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발급하거나 그 사본이 원본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 ⑤ 제4항의 요구는 구술로 한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결정서를 열람 하거나 사본을 발급받은 사람의 서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20조(해석의 기준 등)

-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목적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지방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성립된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의무 성립 후의 새로운 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 ③ 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의 해석 또는 지방세 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따른 행위나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 구 지방세법(2020. 12. 29. 법률 제1776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47조(정의)

담배소비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담배”란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를 말한다.

제48조(과세대상)

- ① 담배소비세의 과세대상은 담배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담배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피우는 담배
 - 가. 제1종 권련
 - 나. 제2종 파이프담배
 - 다. 제3종 엽권련
 - 라. 제4종 각련
 - 마. 제5종 전자담배
 - 바. 제6종 물담배

2. 씹는 담배
3. 냄새 맡는 담배
4. 머금은 담배

③ 제2항의 담배의 구분에 관하여는 담배의 성질과 모양, 제조과정 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0조(납세의무자)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

제151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지방교육세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4. 이 법 및 지방세감면법령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담배소비세액의 1만분의 4,399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0. 12. 31. 대통령령 제3134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60조(담배의 구분)

법 제48조 제3항에 따른 담배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5. 전자담배: 니코틴이 포함된 용액, 연초 또는 연초 고형물을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호흡기를 통하여 체내에 흡입함으로써 흡연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만든 담배

■ 담배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담배"란 연초(煙草)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말한다.
2. "저발화성담배"란 담배에 불을 붙인 후 피우지 아니하고 일정시간 이상 내버려둘 경우 저절로 불이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1-27

꺼지는 기능을 가진 담배로서 제11조의5 제2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담배를 말한다.

끝.